

#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영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4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6일

발 의 자 : 김진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춘수, 주찬식, 김제리,  
김경자(강서), 김동율, 최영수,  
박기열, 유광상, 강구덕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,
- 존치실익이 없는 실무협의회 대신에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함(안 제7조).

나.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,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.

다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

책위원회(이하 ‘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 1·2 부시장이 된다.

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국의 장
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국의 장
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
제10조 중 “성능개선위원회 회의”를 “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<u>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 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(이하 ‘성능개선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<u>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.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<u>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<u>신 설</u>〉</p>	<p>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
제8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(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)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.

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이하 '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 1·2부시장이 된다.

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 의 장
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
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
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-----  
-----  
-----.



다. 전제

- 현행 조례는 미적용 상태이므로 기존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‘서울특별시 성능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(안)’ 을 참조함
- 수당 단가는 서울시 ‘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’ 을 참조
-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-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모두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함
- 기능 활성화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증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
라. 성능개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(안 제7조)

- 성능개선위원회
  - 위원회 구성 : 당연직 및 임명직 내부위원(17명), 시의원(2명), 위촉직 외부위원(21명)

구분	계	당연직 및 임명직	위 촉 직						비고
			소계	시의원	외 부 전 문 가				
					도로시설	상하수도	수자원	건축물	
위원수 (명)	40	17	23	2	8	6	3	4	

- 회의 개최 횟수 : 3회/연
- 외부 위원 수당 : 150천원/명

구분	단위	단가	비고(지급기준 등)
위원회 참석비	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본료 : 100,000원</li> <li>◦ 초과 : 50,0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</li> <li>▶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</li> <li>▶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</li> </ul>

- 소요비용 : 21명 × 3회 × 150천원 = 9,450천원

○ 분과위원회

- 위원회 구성 : 성능개선위원회 외부위원 전원
- 회의 개최 횟수 : 4개 분야 별로 성능개선위원회 개최 전 2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- 외부 위원 수당 : 성능개선위원회와 동일
- 소요비용 : 21명(4개 분과 합산) × 6회 × 150천원 = 18,900천원

마.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
- 위원회 구성 : 당연직 및 임명직 내부위원(12명), 시의원(2명), 위촉직 외부위원(8명)

구분	계	당연직 및 임명직	위 촉 직			비고
			소계	시의원	외부 전문가	
위원수 (명)	22	12	10	2	8	

- 회의 개최 횟수 : 2회/연
- 외부 위원 수당 : 150천원/명
- 소요비용 : 8명 × 2회 × 150천원 = 2,4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  
 사업평가팀장      황훈  
 예산분석관        한기백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☎ 02-3705-1284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e-mail : hophan@seoul.go.kr